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5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5496 지방세 감면신청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구합1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한 지방세 99,200원의 감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5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 내지 15행의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이 사건 처분은'과 '위법하다' 사이에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구 산업입지법'을 '산업입지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 내지 10행의 '재생사업계획'을 '재생시행계획'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의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고시문(갑 제5호증)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5

서 수립한 산업단지 재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재생시행계획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사업시행자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사용될 부동산의 세부 목록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공단지역으로서 이미 도로, 건물, 상가, 주택 등이 건축되어 있어 더 이상 특별히 조성할 시설이 없으므로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기존 업체의 조업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업종의 집단화 및 계열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을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5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왕해진

판사 강동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5

별지

관계 법령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9(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 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